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가입 안내

- 정부에서는 WTO의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정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사법 개정(2011. 5. 30)을 통하여 UIA권고 기준에 의한 교육, 실무수련, 자격검증, 자격등록, 갱신등록, 계속교육을 근간으로 한 『건축사자격제도』를 도입하였고, 건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과 등 주요한 건축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대한건축사협회는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건축사등록원』, 『건축사교육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계 발전을 위한 건축제도의 개선 및 정책 개발, 건축정보 제공, 건축사의 권익신장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협회 정관과 회원신고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하면 건축사사무소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였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건축사는 건축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여 건축계가 하나 되는 건축문화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종류

정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협회에 입회한 자
준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축사와 외국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협회에 입회한 자

■ 회원혜택

- 건축전문지 월간 <건축사>, 건축계 정론지 격주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제공
- 건축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협회주관 각종 전시회 참여 기회 제공
- 건축관련 법령자료 제공
- ARCASIA 등 국제건축전 출품 기회 부여
- 회원복지서비스 혜택
- KIRA NEWS 제공
- 건축관계 법령 질의·상담 및 대정부 건의
- 해외의 각종 건축관련 기술정보 및 국제행사 참여 기회 제공
- 건축사 실무교육 정보 제공
- 정부포상 추천

■ 정회원 가입절차

- 건축사 자격등록 후, 해당 시·도건축사협회 신고서류 제출 및 회비납부
- 제출서류 : 정회원 신고서, 건축사 자격등록증(전자문서), 반명함판사진 2장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추가 서류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 회비안내

1. 회비의 종류 및 금액

구 분	납 부 내 용	납부처
정회원	· 입회비 : 300만원(입회시 1회) · 월정회비 : 3만원(매월) · 시·도건축사회 회비(입회비 및 월정회비) : 해당 시·도건축사회 회칙에 따름	시·도건축사회
준회원	· 입회비 : 50만원(가입시 1회) · 연회비 : 6만원	

2. 회비 사용처

- 입회비 및 정회원(준회원) 회비 : 건축문화발전 및 회원권익증진, 협회조직관리 운영자금 등

■ 본협회 및 시·도 건축사회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본협회	(02)3415-6800	(02)3415-6855	대 전	(042)485-2813-5	(042)485-2818	충 남	(041)338-4088	(041)338-4188
서 울	(02)581-5715~8	(02)523-2284	울 산	(052)274-8836	(052)268-8837	전 북	(063)251-6040	(063)251-6048
부 산	(051)633~6677	(051)634-2966	세 종	(044)862-6336	(044)862-6226	전 남	(061)285-7563~4	(061)285-7567
대 구	(053)753-8980	(053)756-9049	경 기	(031)247-6129~30	(031)242-7072	경 북	(054)859-8170	(054)859-8175
인 천	(032)437-3381~4	(032)437-3385	강 원	(033)254-2442	(033)255-2083	경 남	(055)246-4530	(055)245-4530
광 주	(062)521-0025~6	(062)528-0026	충 북	(043)223-3084~6	(043)223-3089	제 주	(064)752-3248	(064)756-3248

* 회원가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도건축사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등록실적팀(☎ 02-3415-685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를 둘러싼 기형적 제도와 환경

Deformed System and Environment Surrounding Architects

글. 홍성용
Hong, Sungyong
본지 편집국장

건축사 관련 제도들의 모순과 기형적 환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을 요구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수십 년간 간접 선거에 의해 협회를 운영하다 보니 협회장의 임기가 짧고, 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지난 90년대에 회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고, 의무가입은 '개선'이 아닌 '해제'가 됐다. 이렇게 한번 바뀐 제도를 회복하는 데에는 거의 20년 이상이 걸리고 있다.

천만다행으로 협회 운영을 직선제로 개혁한 지 두 번째 만에 건축사를 위한 제도 개선이 어렵게 시도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어렵다고 포기해선 안 된다. 더 설득하고, 명분과 논리로 이해시켜야 한다. 가령 지난 5월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 심사 시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국회의원은 법안 처리에 신중한 정부를 상대로 비유를 들며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에 대해 왜 당사자가 아닌 학회에 의견을 물어야 하는지 의아해 한다. 비단 이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건축사와 관련된 수많은 제도와 환경은 말 그대로 기형적이다. 그러다 보니 건축사들의 본업인 설계 대가는 형편없고, 미래의 건축사가 될 학생들이 건축 업계에서 이탈하는 환경으로 이어진다.



건축사 자격시험 또한 마찬가지다. 건축사 자격시험 조건이 바뀐다고 예고했던 때가 2003년이다. 느닷없이 연 2회 자격시험을 보는 조치도 당혹스럽기 그지없는데, 자격시험 내용은 여전히 부실하다. 건축사 숫자에 대한 연구 또한 단순히 인구를 비

교하는 수준인데, 다른 나라와 달리 초대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건축하는 한국 시장구조는 언급에서 빠져 있다. 인구 구조가 비슷한 영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건축사 수는 절대 적은 편이 아니다. 오히려 OECD 대부분 국가들이 시행하는 개별 건축이 아니라 대단지 공급 주택 형식을 주로 시행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건축사 수는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의과대학 정원에 협의하고, 변호사들은 로스쿨 입학생 및 합격자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친다. 그에 반해서 건축사의 수나 자격시험에 대해 건축사의 역할은 협의한다기보다 통보받는 것에 가까운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들도 인정하다시피 건축사들을 전문가로 대우하는 상황이 열악하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건축사들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불법 면허·자격 대여 등의 행위 또한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감리를 할 때 현장에 나가지 않는 비도덕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느 조직이나 이런 불법적 행위가 백퍼센트 없다고 할 수 없다. 아주 극소수의 불법 행위자들은 어느 조직이나 존재하며, 이들이 대의적 명분을 훼손하고 있음도 주지하고 있다. 이런 불법 행위자 때문에 전체 건축사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이 아닌 상황에서 건축사협회의 징계 권한은 제한적으로 행해질 수밖에 없고, 통제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속된 말로 불법 행위자들 때문에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한 건축사들이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이런 기형적 제도와 환경을 방치할 수 없다. 그 첫 단추가 의무가입이다. 이어 자격시험의 내용을 상향시키고, 직업윤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건축사라는 직업을 더 좋게 만들고 나아가 좋은 나라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